

2014.11.20

'우수기업 세관장확인 생략에 따른 수입신고 방법 안내'

관세청이 성실기업에 대해서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'세관장 요건확인제도 개선방안'을 마련하였습니다. 통관규제를 이원화(Two-track 체계)하여 **법규 성실도가 높은 기업***에 대하여는 **통관단계에서 요건확인을 생략하고**, 요관 확인기관이 통관 이후 이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합니다.

*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공인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등

[확인생략 대상기업] AEO업체, 보세공장, 자율확인 중소기업

- ▶ AEO 업체 : 통관 이후 요건확인기관-기업별 사후관리
- ▶ 보세공장 수입물품 : 국내 제조기업 관리에 준하여 관리
- ▶ 자율확인 중소기업 신청 업체 : 요건확인기관과 협의後 지정

구 분	AEO 등 우량기업	자율확인 중소기업
대상	모든 기업	중소기업
지정방법	(포괄) 지정기준 사전협의 - 기준 해당기업은 자동적용	(개별) 희망 기업 지정 신청 - 세관/요건확인기관 협의 후 지정
세관장확인 면제대상	적용법령의 모든 품목	적용법령의 모든 품목 (단, 필요 시 HSK별 제한 가능)
지정기간	지정기준 유지기간	1년 단위 재심사

※출처 : 관세청

2014.11.20

[법령별 차등운영 대상 기업]

구분	세관장확인생략 대상 기업
전파법	① AEO인증기업, ② 보세공장 제조품 수입업체 ③ 별도 요건확인기관이 요청한 기업
전기용품안전관리법	① AEO인증기업, ② 보세공장 제조품 수입업체 ③ 별도 요건확인기관이 요청한 기업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	① AEO인증기업, ② 보세공장 제조품 수입업체 ③ 별도 요건확인기관이 요청한 기업
유해화학물질관리법	③ 별도 요건확인기관이 요청한 기업
방위사업법	① 보세공장 제조품 수입업체

[요건구비 및 세관장확인 프로세스 변경안]

구분	구분	현행	개정 후
전파법	최초수입	전자파적합인증	변경없음(좌동)
	수입건별	전자파적합인증확인서 신청/제출	모두 생략
전기용품 안전관리법	최초수입	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 합성확인	변경없음(좌동)
	수입건별	안전인증확인서 · 안전확인신고서 ·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신청/제출	모두생략
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	최초수입	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	변경없음(좌동)
	수입건별	공산품동일모델확인증 신청/제출	모두 생략
유해화학물 질관리법	최초수입	유독물수입신고	변경없음(좌동)
	수입건별	유독물수입신고확인증 신청/제출	모두 생략
방위사업법	수입건별	수입허가서*	허가서 신청필요 세관제출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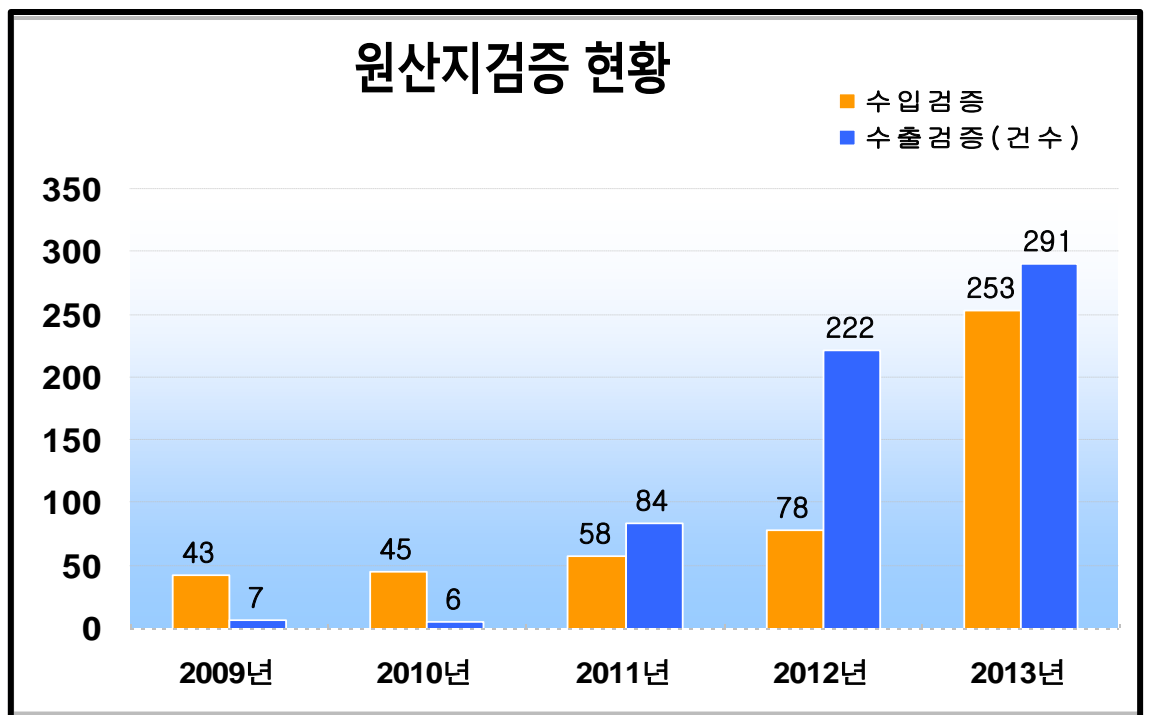
* 보세공장 단위로 제조허가를 받은 후 완제품 마다 수입허가 필요

2014.11.20

FTA 원산지검증, '증명자료 보관'에 성패 달려

- FTA 체결국이 증가함에 따라 FTA를 통한 교역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최근 **FTA를 활용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증가**하고 있습니다. 이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.
- 원산지검증이란 수입자가 신고한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**입니다.

즉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.



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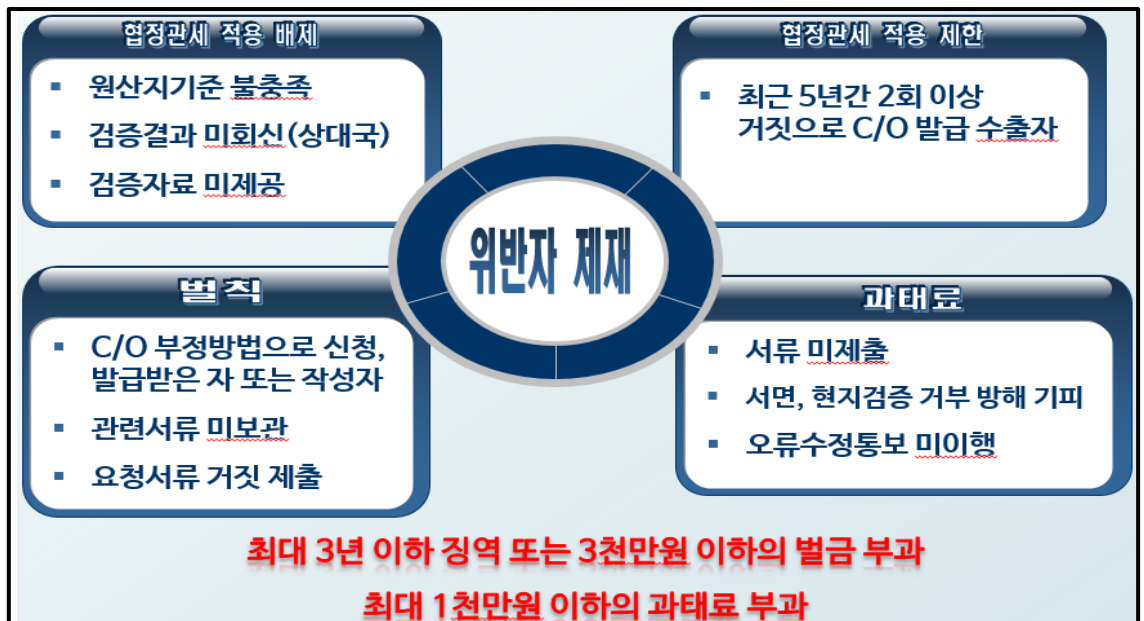
원산지검증방식

원산지검증은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·실시하고 있으며 각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협정	간접검증	직접검증	회신기한
한·칠레	-	서면질의 및 정보요청, 방문조사	-
한·싱가포르 (순차적용)	① 수출국 세관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요청	② 방문조사	-
한·EFTA	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	-	10개월
한·아세안 (순차적용)	①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	② 방문조사	2개월
한·인도 (순차적용)	①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	②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	3개월
한·EU	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	-	10개월
한·페루	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,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	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방문 조사	150일
한·미	간접검증 방식 적용(섬유제품에 한함)	정보요청, 서면질의, 방문조사	섬유 : 6개월
한·터키	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	-	10개월

제재조치

원산지검증은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·실시하고 있으며 각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

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서류보관의무

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 이후 **수출자, 생산자 및 수입자**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**5년동안 보관**하고 세관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,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세관세법인은 KOTRA FTA 업종 전문인력 양성과정 주관 관세법인으로, 한-EU·한-미 FTA 원산지 검증에 관한 다수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

평소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만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세법인 FTA팀으로 연락바랍니다.